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조정식・민병덕・정성호

김성환 · 김재원 · 염태영

노종면 • 박홍근 • 이해식

정을호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 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

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 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 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 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법률 제 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 2. 지역별 · 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 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이하"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17조의3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해외건설진흥계획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둔다"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로 한다.

-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지원공사"를 "제17조의3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지원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외건설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
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의 수립) ①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	
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	
의 의견을 조사하여 <u>장기 해외</u>	<u>다음 각</u>
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해외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u>야 한다</u> .	<u>한다</u> .
<u><신 설></u>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
	<u>석 및 수주전망</u>
<u><신 설></u>	2. 지역별・국가별 해외건설 진
	<u>출전략</u>
<u><신 설></u>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
	력 제고방안
<u> <신 설></u>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u> <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연도별 해외건설추
	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u>정책방향</u>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 자계획
-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주진계획 및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17조의3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⑥ 해외건설진흥계획등의 수립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 설진흥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통부 소속으로 해외건설진흥위 원회를 둔다.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 원회 부위원장
- 2. 해외건설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성·운영	등에	관하이	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i	청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구</u>	정	한	. ,	사	항-	오	이		해	외	건	설	<u>진</u>
	<u>흥</u>	위	원	회	의									
제	34	조	의	2(벌	칙	ス	현용	-어	ト	}	공	무	원
	의	제)	<u>저</u>	17	'조	의	30		U	-른	<u>-</u>	해	외
	<u>건</u>	설	<u>진</u>	충	위	원	회.	의	ç	4	<u> </u>	궁	<u>.</u>	공
	무	원	0]	Ċ	ᆉ	<u> 1</u>	사	람	ロフ	<u> </u>	기	원	공	사
			_											